

공정위,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8년 2월 24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실효성과 객관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도록 규정한 데 따라 지난 7월 2일(목) 과징금 부과과정에서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금액을 5단계로 세분화시킨 후 액수에 따라 별도의 산식을 적용하는 새로운 내용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7월 13일(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동 과징금 부과기준의 제정에 따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채무보증, 상호출자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기준이 강화되어 신규채무보증과 같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을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부과 기준금액인 범위반금액에 기본과징금산정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본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신규채무보증 또는 상호출자 사실이 적발되거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한 사업자들은 앞으로 위반금액이 10억원일 경우 7,000만원, 100억원일 경우는 5억2,000만원, 1,000억원일 경우는 23억 2,000만원, 1조원일 경우 68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게 되며, 이와 같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리고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범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7조제3항에서 5억원 범위내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범위반회사의 직전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산정되는 기본과징금을 부과토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또한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및 범위반사실의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자료제출 거부, 범위반기간, 경제력집중 또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당해회사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기본금액의 3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가산 또는 경감해주기로 하였다.

동 과징금 부과기준은 위반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 종전 규정보다 과징금의 최고액 자체는 크게 낮아졌으나, 공정위의 관행상 그동안 1~2% 수준의 낮은 과징금률을 적용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새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기업들이 부담하는 과징금부과액이 대폭 높게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호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과징금)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8년 7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I. 목 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부과를 위한 과징금부과기준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시의 참작사유 등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과징금부과기준금액의 산정

1.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을 과징금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주식취득) 또는 제5호(회사신설에의 참여)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합병)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영업양수)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을 과징금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경우는 나중에 주식을 취득하여 상호출자를 발생시킨 회사가 취득·소유한 상대회사 주식의 취득가격, 다만, 법 제14조제3항에 의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나 동 유예기간 내에 상호출자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는 상호출자하고 있는 각각의 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상대회사 주식의 취득가격
 - ②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경우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의 취득가격
3.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및 제10조의3(기존채무보증의 해소)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을 과징금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단, 외화대출에 대한 채무보증은 당해 법위반행위가 있는 날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징금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신규채무보증의 약정금액
 - ② 법 제10조의3(기존채무보증의 해소)제1항을 위반한 경우는 기존채무보증의 약정금액의 합계액
 - ③ 부칙('98.2.24)제2항(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을 위반한 경우는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기자본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기존채무보증의 약정금액의 합계액, 다만,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이후 해소시점까지 자기자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III. 과징금부과기준

1. 과징금은 다음의 산정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하 “기본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로 한다.

① 과징금부과기준금액에 <표1>의 기본과징금산정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표1 : 과징금 산정기준>

과징금부과기준금액	기본과징금산정율
i) 10억원 이하	7%
ii) 10억원 ~ 100억원	10억원까지 0.7억원+10억원 초과분의 5%
iii) 100억원 ~ 1,000억원	100억원까지 5.2억원+100억원 초과분의 2%
iv) 1,000억원 ~ 1조원	1,000억원까지 23.2억원+1,000억원 초과분의 0.5%
v) 1조원 초과	1조원까지 68.2억원+1조원 초과분의 0.2%

② 다만,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에는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년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표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표2 :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1천억 이하	1천억~5천억	5천억~1조원	1조원 초과
기본과징금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2.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범위반사유, 범위반내용, 범위반회사의 경영상황, 기타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동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 ① 당해 범위반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② 최근 3년간 범위반으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및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포상 또는 우수회사로 평가를 받은 사실
- ③ 범위반기간, 범위반의 방지 및 해소노력의 정도
- ④ 당해 위반행위 및 관련행위가 경제력집중 또는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 i) 기업결합인 경우는 시장점유율,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
 - ii) 상호출자, 채무보증인 경우는 당해회사의 출자비율, 출자형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간,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평가
- ⑤ 당해회사의 규모, 경영상황 등 현실적인 과징금 납부능력
- ⑥ 기타 ① 내지 ⑤에 준하는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